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160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3

1.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이만희의원안(2), 김태호의원안, 정희용의원안, 정부안) ····· 3

# Ⅰ. 개요

## 1.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160호)

###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태호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6. 30.

(3) 회 부 일 : 2025. 7. 1.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경우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15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되며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기부 활성화

를 통한 지방재정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58조).

##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1.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이만희의원안(2), 김태호의원안, 정희용의원안, 정부안)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제58조)

○ 세액공제 규모

- 기부금 금액별 공제율

| 기부금 규모 | 공제금액 |
|---|---|
| 10만원 이하 | 기부금 × 100/110 |
|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0만원 × 100/110 + (기부금 - 10만원) × 15/100 |

※'24년 세법개정
- 기부금 규모: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td><td>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규모 상향

○ 세액공제 규모 상향

**- 기부금 금액별 공제율**

**(김태호의원안)**

| 기부금 규모 | 공제금액 |
|---|---|
| 20만원 이하 | 기부금 × 100/110 |
| 2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 20만원 × 100/110 + (기부금 - 20만원) ×15/100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0만원 × 100/110 + 980만원× 15/100+ (기부금 - 1천만원)×30/100 |

**(정희용의원안)**

| 기부금 규모 | 공제금액 |
|---|---|
| 50만원 이하 | 기부금 × 100/110 |
| 5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 50만원 × 100/110 + (기부금 - 50만원) × 15/100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50만원 × 100/110 + 950만원× 15/100+ (기부금 - 1천만원) ×30/100 |

**(정부안)**

</td></tr>
</table>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

- 특별재난지역 지방자치단체 기부

| 기부금 규모 | 공제금액 |
|---|---|
| 10만원 이하 | 기부금 × 100/110 |
|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0만원 × 100/110 + (기부금 - 10만원)×30/100 |

</td><td>

| 기부금 규모 | 공제금액 |
|---|---|
| 10만원 이하 | 기부금 × 100/110 |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10만원 × 100/110+ (기부금 - 10만원)×40/100 |
|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0만원 × 100/110 + 10만원× 40/100+ (기부금 - 20만원)× 15/100 |

- 특별재난지역 지방자치단체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

(이만희의원안)

| 기부금 규모 | 공제금액 |
|---|---|
| 20만원 이하 | 기부금 × 100/110 |
| 20만원 초과 | 20만원 × 100/110 + (기부금 - 20만원) ×30/100 |

(김태호의원안)

| 기부금 규모 | 공제금액 |
|---|---|
| 20만원 이하 | 기부금 × 100/110 |
|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0만원 × 100/110 + (기부금 - 20만원) ×30/100 |

(정희용의원안)

| 기부금 규모 | 공제금액 |
|---|---|
| 50만원 이하 | 기부금 × 100/110 |
| 5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50만원 × 100/110 + (기부금 - 50만원) ×30/100 |

(정부안)

</td></tr>
</table>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 <u>〈신 설〉</u></td><td>
<table>
<tr><th>기부금 규모</th><th>공제금액</th></tr>
<tr><td><u>10만원 이하</u></td><td>기부금 × 100/110</td></tr>
<tr><td><u>10만원 초과<br>20만원 이하</u></td><td>10만원 × 100/110 +<br>(기부금 - 10만원)×40/100</td></tr>
<tr><td><u>20만원 초과<br>2천만원 이하</u></td><td>10만원 × 100/110 +<br>10만원× 40/100+<br>(기부금 - 20만원)×<br>30/100</td></tr>
</table>
* 선포일로부터 3개월 내 기부 한정<br><br>
- <u>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기부 시 세액공제한도 상향 (이만희의원안)</u><br>
<table>
<tr><th>기부금 규모</th><th>공제금액</th></tr>
<tr><td><u>20만원 이하</u></td><td>기부금 × 100/110</td></tr>
<tr><td>20만원 초과<br><u>2천만원 이하</u></td><td>20만원 × 100/110 +<br>(기부금 - 20만원)<br>×15/100</td></tr>
</table>
</td></tr>
</table>

* 이만희의원안 2025. 2. 17.(의안번호 8222), 이만희의원안 2025. 4. 21.(의안번호 9971), 김태호의원안 2025. 6. 30.(의안번호 11160), 정희용의원안 2025. 9. 30.(의안번호 13374),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5건의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 및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기부에 우대 적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만희의원안(의안번호 9971)은 특별재난지역 지방자치단체 기부에 대해 110분의 10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전액 세액공제 받는[1]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2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30%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김태호의원안은 110분의 10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전액 세액공제

1) 국세 세액공제액(10만원 이하분의 경우 110분의 100)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국세·지방세 세액공제액을 합하면 기부액이 전액 공제됨.

받을 수 있는 기부금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2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의 구간에 대한 공제율을 15%로,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구간에 대한 공제율을 30%로 하며, 이만희원안(의안번호 9971)과 같이 특별재난지역 지방자치단체 기부에 대해 공제율 및 한도를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이만희의원안(의안번호 8222)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에 따른 농촌전환우선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으로, 110분의 10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2] 기부금 금액 구간을 농촌전환우선지역에 한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구간에 대한 공제율을 30%로 하려는 것이며,

정희용의원안은 110분의 10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5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의 구간에 대한 공제율을 15%로,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구간에 대한 공제율을 30%로 하며, 특별재난지역 지방자치단체 기부에 대해 110분의 10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전액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5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30%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2) 국세 세액공제액(10만원 이하분의 경우 110분의 100)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국세·지방세 세액공제액을 합하면 기부액이 전액 공제됨.

정부안은 10만원 초과 부분을 세분화하여 ①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구간에 대한 공제율을 40%로, ② 20만원 초과 2,000만원 구간에 대한 공제율은 15%로 하되,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는 경우 해당 구간의 공제율을 30%로 각각 상향하려는 것임.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 도입되었으며, 현행법은 거주자가 광역·기초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91%(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기존의 세액공제 적용대상 고향사랑기부금 한도액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되었고, 2025년 2월 세법개정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음.

□ 먼저, 고향사랑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 금액 구간의 확대, 공제율 상향, 공제대상 기부금 한도 확대[3])하고 특별재난지역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긍정

3)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세액공제 적용대상 고향사랑기부금 한도액이 2,000만원으로 상향되어 그 입법취지가 달성되었음.

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평균 76% : 24%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2024년 준 43.3%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지방재정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세 및 지방세 비중]

(단위: 조원, %)

| 연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합계 |
|---|---|---|---|---|---|---|
| 총 조세수입 | 387.6 | 456.9 | 514.5 | 456.6 | 450.6 | 2,266.2 |
| 국세 | 285.5 | 344.1 | 395.9 | 344.1 | 336.5 | 1,706.1 |
| (국세 비중,%) | 73.7 | 75.3 | 77.0 | 75.3 | 74.7 | 75.3 |
| 지방세 | 102.0 | 112.8 | 118.6 | 112.5 | 114.1 | 560 |
| (지방세 비중,%) | 26.3 | 24.7 | 23.0 | 24.7 | 25.3 | 24.7 |

자료: 국세청.관세청「징수보고서」, 행정안전부「지방세통계연감」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추이]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지방재정 자립도 | 45.2 | 43.6 | 45.3 | 45.0 | 43.3 |

재정자립도=(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100(%)
자료: 통계청

특히, 거주자가 기부한 금액을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구간을 2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그 상향 규모에 비례하여 소액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음. 이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4]에서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부자에게 기

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부액의 30%의 범위에서 지역특산품, 지역 상품권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부자 입장에서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는 세액공제를 통해 경제적 손실 없이 답례품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임.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2년 8월에 실시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5] 결과에 따르면, 75.3%의 국민이 기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을 확대할 경우 세제혜택 등의 유인이 확대됨에 따라 기부금액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희망 금액]

(단위: %)

| 기부의사 없음 | ~10만원 | 10만원 ~20만원 | 20만원 ~50만원 | 50만원 ~100만원 | 100만원 ~500만원 |
|---|---|---|---|---|---|
| 24.7 | 45.9 | 19.9 | 6.5 | 2.2 | 0.8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둘째, 이만희의원안(의안번호 9971번), 김태호의원안, 정희용의원안 및 정부안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가 확대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재정 소요를 일부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①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 구간은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5) 국승용·김창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동 설문조사는 2022년 8월, 18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일반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와 특별재난지역이 동일하고,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만 일반 기부금의 공제율(15%) 대비 상향된 30%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 한도가 20만원(이만희의원안, 김태호의원안) 또는 50만원(정희용의원)으로 확대되거나,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30%로 확대할 경우(정부안), 기부금 규모가 확대되어 재난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내의 대규모의 재정 수요를 일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이만희의원안과 관련하여(의안번호 8222),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원과 같은 별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조항은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되는 한도를 상향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기부가 늘어나, 별도의 정부재정 지원 정책이 없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의 재정 여력이 증가할 수 있음.

□ 다만, 아래와 같은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제도로 아직 그 정책적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추후 제도의 효과성에 대

한 검증이 이루어진 후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둘째, 현행 법령상 기부금을 전액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는 정치자금 기부금[6]과 고향사랑 기부금에만 있으며, 주로 10만원 이하의 소액기부 부분에만 한정하여 운용하는 특별한 세제지원이라는 점에서, 이를 2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다른 조세지원과의 형평성, 세수 감면 효과 등을 함께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이만희의원안(의안번호 9971)은 특별재난지역의 기부와 관련하여 공제한도를 삭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를 두고 있지 않은 제도는 전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고향사랑 기부금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효과 외에 답례품 제작 등의 운영비 지출[7]이 수반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체 재정 차원에서는 순지출이 발생하여 재정자원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액

---

6)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구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넷째, 이만희의원안(의안번호 8222)과 관련하여,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의 의미의 모호성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높은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소멸 우려가 높은'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하여 법문만으로 어떤 지역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될 것인지에 대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8] 따라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대상으로 기부금 전액이 비과세되는 한도를 상향할 경우, 이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의 증가 수준 또한 예측이 어려울 수 있음.

다섯째, 해당 규정은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그 공제한도가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되었음을 감안할 때, 공제 한도 확대 후 법 개정의 효과를 점검한 후 공제한도의 추가적인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9]

한편, 김태호의원안의 경우 사업자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을 초과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과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 검토보고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4.9.

9)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4년에는 399억원, 2025년에는 425억원의 조세 지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관련하여 손금이 아닌 필요경비로 자구를 수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5호[10]는 손금을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르는 손금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점, 현행 규정은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규정상 '손금'의 의미가 '필요경비'로 명확히 해석될 수 있어 보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이만희의원안(의안번호 8222)의 전제가 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이 소관 상임위 심의 결과 대안반영 폐기되었는데,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관한 사항이 대안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심사과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만희의원안(의안번호 9971)의 전제가 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72호)[11]도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의 심사경과를 확인할 필요도 있음.

한편, 기획재정부는 정부제출안에 따를 경우, 2027년에서 2030년까지 4년간 총 648억원(연평균 16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

10)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손금을 말한다.

11)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현행 2,000만원인 기부금 한도를 폐지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부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7～2030년)]

(단위: 억원)

| | 2027 | 2028 | 2029 | 2030 | 누적 | 연평균 |
|---|---|---|---|---|---|---|
| 정부안 | △162 | △162 | △162 | △162 | △648 | △162 |

| 문 의 처 |
|---|
| 02)6788-5149 |